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문단번호

참조

적용 한1.1

회계논제 1~3

결론 4

시행일 한4.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결론도출근거]

SIC 25의 결론도출근거 (5-8)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문단 한1.1~한4.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적용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법인세 부채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기업의 지분상품이 상장되거나 자본이 재조정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다. 또한 지배주주가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기업은 다르게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과세혜택을 받거나 잃을 수 있고 적용될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 2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기업의 당기법인세 부채나 자 산에 즉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납세지위의 변동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업이 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증 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

3 회계논제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세효과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론

4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에 직접 가감되는 경우나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SIC 25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25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 2003년의 IAS 12의 개정과 2004년 IAS 38의 개정, 2007년 IAS 1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표시하였다. 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한.]

- IAS 12 문단 58은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순<u>당기손</u> 익 이외의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또는 취득안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서의 문단 61A는 동일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u>당기손익 이외로 자본에 작접 가</u> 감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자본에 작접 가감하도록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5A IAS 12 문단 62는 다른 IFRS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의 예를 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함으로써 인식된 자본 금액이 변동한다.
- 6 IAS 12 문단 62<u>A</u>는 다른 IFRS에서 자본에 직접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의 예를 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여 인식함으로써 인

한1) 원문에 따라 취소선 표시 등을 반영함.

식된 자본 금액이 변동한다.

7 IAS 12 문단 65는 재평가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변동된다면, 이 와 관련하여 회계상 재평가금액을 자본에 직접기타포괄손익(재평 가잉여금)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까지만 그 세효과를 자본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8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한 세효과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당기 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거래나 사건과 반드시 관련이 있으므로, 자본에 직접 가감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누적 과세금액은 과거에 새로운 납세지위가 적용되었더라면 자본에 직접 가감될 항목의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AS 12 문단 63(2)에 따르면 세율이나 기타 세법상의 변화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 자본에서 가감한 항목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 이로 인한 세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IAS 12 문단 63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배분이 필요할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1.1과 한4.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설계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열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25호가 SIC 25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2025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25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주요 요구사항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당해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에 직접 가감되는 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당해 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법인세: 기업이나 주 주의 납세지위 변동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es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